

##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7년 12월 4일  
 발의자 : 이종호, 강태원, 민경환,  
 이대원, 오용식, 이언구,  
 박영웅, 임현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 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,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를 제64조로 변경함(안 제3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함 (안제9조)

#### 나. 수당관련 미비점 보완

-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(안 제10조)
- 수당을 일비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별표2)

#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발췌 : 별첨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제134조
- 나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, 제84조

##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5조제3항”을 “제134조제3항”으로, “제46조의2”를 “제83조”로, “제47조”를 “제84조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제56조”를 “제6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47조제3항”을 “제8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수당을”를 “일비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, “수당을”를 “일비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 한다.

[별표2] 중 구분란의 “수당”을 “일비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 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다)의 선임 및 운 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..... 제134조제3항, ..... 제83조 ... 제84조... ..... ..... .....
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(생략) ②(생략) ③도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 ④(생략)	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④(현행과 같음)
<b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b>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	<b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b> ..... ..... 제84조제3항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



## 관계법령발췌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의결정족수) ①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34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명시이월비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  
5. 금고의 결산

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

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